

1. 공급업체 안전환경 보건관련 서류

- 안전보건환경관리조직도, 법정안전보건교육계획, 사고발생 시 신고 및 비상대응체계 등

1-1. 안전보건환경관리 조직도

[예시] 안전관리조직

1. 안전관리조직

1.1 안전관리조직의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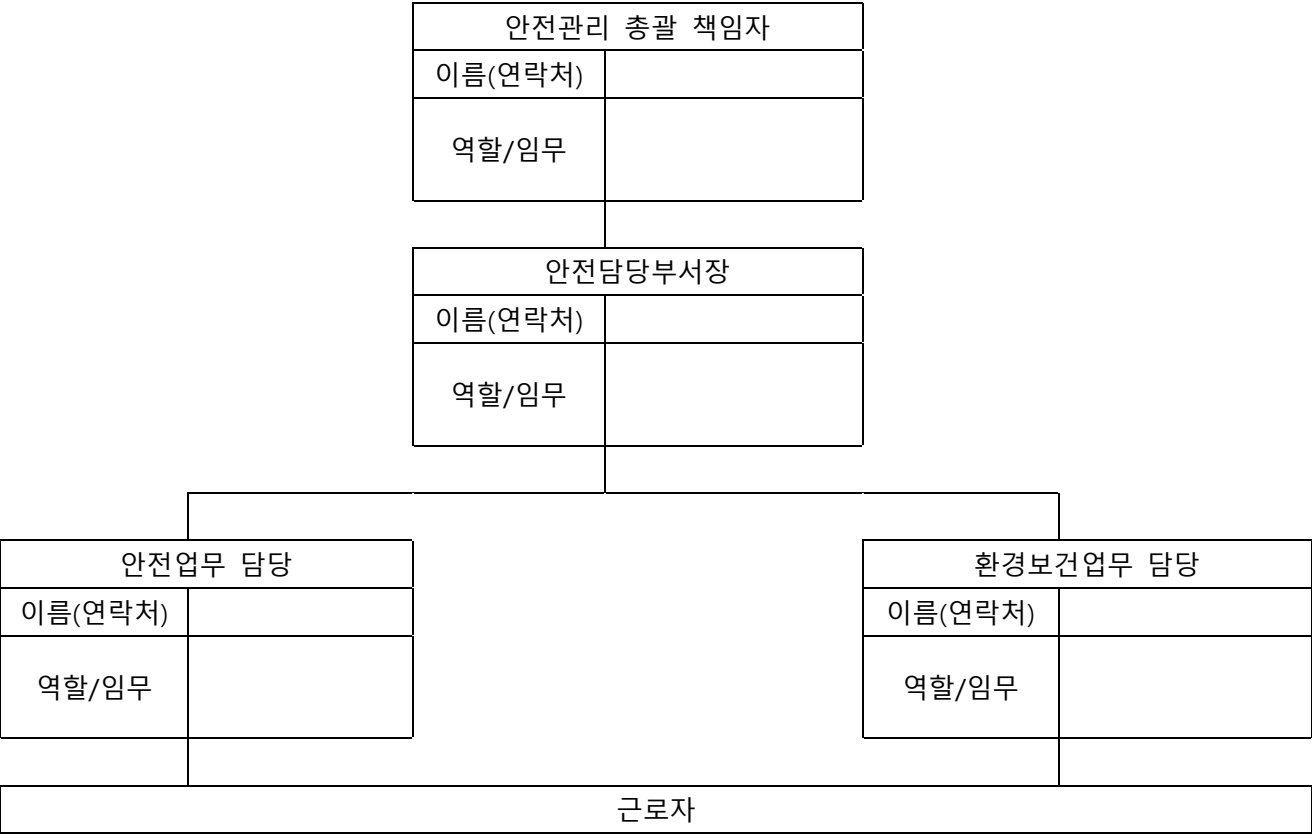
(1) 안전관리조직의 기본역할

- 가.
- 나.
- 다.....

(2)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

- 가.
- 나.....

1.2 안전관리 조직표 (자체양식)



1-2. 법정안전보건교육계획 (각 회사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)

[예시] 안전보건교육계획 예시

2. 안전·보건교육계획

구분	대상	실시시기	교육시간	강사	교육내용
정기교육	근로자	매월	월2시간	사내강사 (관리감독자)	-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사항 -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관련 사항 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관한 사항등
	관리감독자	연간	연 16시간	위탁교육	-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사항 - 관리감독자 역할, 임무 - 유해위험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등
채용 시 교육	생산직근로자	채용 시	8시간	사내강사	- 작업개시 전 점검 사항
	일용근로자		1시간	(관리감독자)	-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
작업내용 변경교육	생산직근로자	작업내용 변경 시	2시간	사내강사	- 당해설비,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
	일용근로자		1시간	(관리감독자)	- 산업안전보건법 등
특별교육	생산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	유해,위험 작업 시	16시간 2시간	사내강사 (관리감독자)	-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사항 - 대상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(작업해당 시)
건설업 기 초안전보건 교육	건설 일용근로 자	최초	4시간	위탁교육	-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- 안전의식 제고 -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등
(기타 자체 교육, 타법 에서 규정 하는 교육 등)					

*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참조

1-3. 사고발생 시 신고 및 비상대응체계

[예시] 비상대응체계

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내용

1.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

- ✓ 사고 발생시 : 즉시 보고(구두)
 - 협력회사 구성원 → 현장대리인 → dopco (담당자)
 - * 화재폭발, 누유 등 긴급상황 시에는 발견자가 즉시 dopco 에 보고
- ✓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및 대피 후 보고

2. 보고내용

- ✓ 사고내용 : 일시, 지역, 유형, 관련설비, 당시 작업현황
- ✓ 조치사항 : 응급조치 현황
- ✓ 피해사항 : 인적피해(성명, 소속, 직무, 상해정도), 물적 손실내역

2. 최근 2년간(제출일 기준) 안전환경보건법규 위반 과태료/벌금 내역

[예시]

최근 2년간 안전환경보건법규 위반 과태료/벌금 내역 (예시)

* 제출일 기준 최근 2년간

년도	처분일	사유 (근거법 등)	내용 (과태료/벌금내역)	비고
년				
년				
년				

당 사는 대한송유관공사 공급업체 등록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고 위 기재사항에 대해 거짓이 없으며,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의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회사명 :
대표자 : (인)

대한송유관공사 귀하

* 참고, 안전환경보건법규란 산업안전관련 법규, 환경관련 법규, 건설관련 법규 등 안전환경보건을 위해서 규정한 제반 법규를 말한다.

3. 최근 3년간(제출일 기준) 중대재해 발생 여부

[예시]

최근 3년간 중대재해 현황 (예시)

* 제출일 기준 최근 3년간

년도	재해일자	발생위치	발생형태	재해내용	비고
년					
년					
년					

당 사는 귀사의 공급업체 등록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고 위 기재사항에 대해 거짓이 없으며,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의의를 제기 않겠습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회사명 :
대표자 : (인)

대한송유관공사 귀하

* 참고, '중대재해'란 산업안전보건법(제 2 조)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 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.
① 사망자가 1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 명 이상 발생한 재해
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 명 이상 발생한 재해